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

변호사 임영철

법문사



>> 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 법무심의관
 - 심판관리관
 - 정책국장
 - 송무기획단장
 - 하도급국장
 - 직장협의회가 선정한
 '바람직한 公正人像'

Visiting Fellow

- Stanford Law School
 - Federal Trade Commission
 - Pillsbury Madison & Sutro LLP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혁신관리자문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

서 문



저녁 6시, 거리에 차를 세우려다가 이런 표지판을 마주친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이상은 모든 것이 금지된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은, 2시간의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대가 지났으므로 지금은 이곳에 주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에서 몇 년씩 주재한 한국의 외교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필자에게 가르쳐 주었었다. 그러나 명백히 금지되지 않은 한 모든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시민들은, 지금은 표지판에 적힌 시간대가 아니므로 2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가 이들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와 그 사회의 역동성을 얼마나 엄청나게 차별짓게 될 것인지 상상이 되는가?

국민의 일반적인 자유의 확대로 특징지워지는 근대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부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이 하루빨리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바뀌어야 국민의 창의성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고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외환위기 이후의 부즈알렌 보고서에서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장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모든 경제부처를 없애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만 그 위상을 올려서 존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필자도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여 왔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집행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적어도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의 사명으로까지 느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일하던 199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무심의관으로 전직하면서 경쟁법의 운영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초

대 심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으로 6년간 재직하였는데, 이 기간은 한마디로 ‘경쟁법과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무수한 고민들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던 경쟁정책과 경쟁법 분야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십 수 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였고, 게다가 미국의 법체계가 일본이라는 중간경로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일부 변형되거나 추가되는 과정을 거친 까닭에 제도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부처와는 달리 경쟁법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중요한 기능으로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잘 정비된 절차와 비교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는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였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경쟁법 제도와 절차를 심판관리관실의 뜻 있는 후배들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경쟁법 제도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였는데, 村上政博의 ‘독점금지법 일미비교’, 藤原英郎의 ‘지주회사 입문’, 菊地元一 등의 ‘續코멘타르 독점금지법’, 일본 경제법학회의 ‘독점금지법 강좌’ 등을 번역하고, ‘일본 독점법 심결·판례백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미독점금지법 해설’ 등은 내부의 업무참고용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쟁법 운영에 대한 이해를 직원들과 함께 넓혀나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미진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 FTC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미국의 정세훈변호사에게 FTC와 DOJ의 사건처리실무절차 전반을 정리하는 용역을 맡겨서, FTC의 Rules of Practice, Operating Manual, 경쟁국 Handbook의 번역본을 발간하였는데, 이 자료를 계기로 미국 경쟁당국의 실무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심판관리관실에서는 사건처리 일선부서에서 제기되는 실로 다양한 실체법, 절차법상의 법률해석 관련 질의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비슷비슷한 질의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그 때마다 바뀐 실무자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질의회신에 고유번호를 붙이고 담당 사무관의 실명과 회신일자를 명기해서 각국에 배포하여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1차로 115개, 2차로 90개의 회신내용을 책자에 담아서 ‘공정거래관련 실무가이드’라는 제목의

책자로 간행하였다. 필자는 특히 담당사무관의 이름과 작성일자를 명기하도록 하는 방식을 ‘문서실명제’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담당자에게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함과 함께 내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주심위원 지정제도’, ‘개별 위원들에 대한 심결보좌제도’, ‘심판관리관실에 대한 피심인의 직접 의견제출제도’ 등 공정거래위원회 심리절차의 대심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들을 도입해 나갔는데, 돌이켜 보면 그 때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보람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2002년도에 정들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사건들을 다루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사안을 들여다보면 때보다도 더 미세하고 구체적인 다양한 쟁점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고, 필자 또한 그러한 숙제들을 해결하는데 무엇인가 일조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다.

필자가 공정거래법과 인연을 맺은 이래 경험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한편의 책을 만들고자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직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과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작업은 순탄치 못했고 그 결과도 부끄럽고 가슴이 답답하다. 변호사 일에 바빴다는 핑계가 쉽게 떠오르기는 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피해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안다.

그래도 긴 여정의 출발점을 일단 마련해 두려는 욕심에 출간을 밀어붙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인쇄된 책의 외양을 갖춘 이후에 들여다보면 다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쉽게 눈에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학문의 체계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공정거래 사건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러한 합리성에 입각한 이론의 대결에 의하여 사안의 결론이 매듭지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달리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학문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사안의 위법성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장래의 거창한

욕심이라면 이 책을 민법 교과서의 수준처럼 논점마다 이론의 체계를 갖추어서 정리된 공정거래법 책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개념과 제도를 좀 더 학리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정판을 내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법학계에서 다소 동떨어진 분야로서 생성되고 있는 듯한 공정거래법 분야를 우리의 일반 행정법체계에 체계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뜻을 같이하는 법학자와의 공동작업이 되기가 쉬울 것이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특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조성국교수는 필자가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 필자를 내몰아 주었고, 박주영서기관은 탁월한 식견으로 필자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믿음직한 상담역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연구회의 구성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마무리 작업에 동참하여 주었다. 이들을 만나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행운이었고, 이들에게도 나와서 만남이 그러한 의미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2007년 1월

저 자

차 례

제 1 장 독점규제법의 유래와 목적

제 1 절 독점규제제도의 역사	1
I. 유 래 1	
II. 미 국 2	
III. 일 본 5	
IV. 우리나라 6	
제 2 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8
I. 경쟁촉진 9	
1. 완전경쟁과 유효경쟁 9	2. 자유경쟁과 공정경쟁 11
II. 경쟁촉진 이외의 다른 목적 11	
1. 거래의 자유 12	2. 소비자보호 13
3. 중소기업 보호 14	
III.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16	
IV. 결 어 17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및 규제의의	19
제 2 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21
I. 가격남용행위 21	
II. 출고조절행위 23	
III. 사업활동방해행위 24	
IV. 진입제한행위 27	
V.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27	

제 3 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29
제 4 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0
제 5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1

I. 시정조치 31

II. 과징금 33

III. 형벌 34

논점검토

논점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의의 및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 35

논점 2. 독점사업자의 독점이윤 추구행위에 대한 규제 43

논점 3.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 47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1 절	기업결합 개요	51
-------	---------------	----

I. 기업결합의 의의 51

II. 기업결합의 유형 53

1. 영위업종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53

2. 기업결합 수단·방법에 따른 분류 54

제 2 절	기업결합 심사	55
-------	---------------	----

I. 개 요 55

II. 기업결합 심사절차 57

1. 법적용 여부 심사 57

2.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60

3. 관련시장의 획정 62

4.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66

5. 예외인정 74

III.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76

1. 의 의 76

2. 불공정기업결합의 유형 77

제 3 절	기업결합의 신고	77
-------	----------------	----

I. 신고대상(법 제12조) 78

1. 신고대상 회사규모 78

2.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79

Ⅱ.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	80
1. 관련법에 의한 투자 또는 지원목적의 기업결합(법 제12조 제3항)	80
2.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사전협의한 경우(법 제12조 제4항)	81
Ⅲ. 신고시기 및 기한	81
Ⅳ.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법 제12조 제7항)	82
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법 제12조 제8항)	83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4
Ⅰ. 탈법행위의 금지	84
Ⅱ. 시정조치(법 제16조 제1항)	84
Ⅲ.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법 제16조 제2항)	87
Ⅳ. 이행강제금(법 제17조의3)	88
Ⅴ. 벌 칙	88
논점검토	
논점 1.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	89
논점 2.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과 현행 기업결합심사기준	97
논점 3.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평석	103
논점 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불복방법	113
논점 5. SSNIP 테스트 및 임계매출감소분석	123
논점 6.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의 한미비교	131

제 4 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 1 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폐해	145
Ⅰ. 경제력집중의 의의 및 현황	145
1. 일반집중	146
2. 산업집중	146
3. 소유집중	147
Ⅱ.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원인 및 특징	148
Ⅲ. 경제력 집중의 폐해 및 규제	150
제 2 절 지주회사	152

I. 개	요	152
II. 지주회사의 개념 및 요건		153
1.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154	2.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 154
3. 주된 사업	155	4.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 156
III.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156
IV.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157
1. 부채비율 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157
2.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을 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157
3. 타 회사 주식소유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159
4.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160
5. 보고의무(법 제8조의2 제5항)		161
V. 자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2 제3항)		161
1.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제한(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161
2.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을 제한(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163
VI.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제한(법 제8조의2 제4항)		164
VII.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법 제8조의3)		164
VIII.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165
1. 탈법행위의 금지	165	2. 시정조치 165
3.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165	4. 과 징 금 166
5. 벌	칙	167

제 3 절 대규모 기업집단 167

I. 기업집단의 개념 및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167
1. 기업집단의 개념		167
2.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169
3. 계열회사 편입·제외,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외		171
II. 상호출자금지		183
1. 대상 및 내용	183	2. 예외인정 184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84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		185
III. 출자총액제한		187

1. 대상 및 내용	187	2.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188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96		
IV. 채무보증제한	199		
1. 대상 및 내용	199	2. 예외인정	200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02		
V.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202		
1. 개 요	202	2. 예외인정	203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04		
VI.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204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4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4		
VII. 신고의무·자료확인 요구·탈법행위 금지	207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 1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미	209
I. 개 념	209
II.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이유	210
III.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의 변천	210
제 2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법 제19조 제1항)	211
I. 주체 : 둘 이상의 사업자	212
II. 합 의	213
1. 합의의 개념 및 범위	213
2. 합의의 입증방법	215
III. 경쟁제한성	219
제 3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222
I. 가격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22
1. 개 념	222
2. 구체적 형태	224
3. 사 례	224
II. 거래조건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225
1. 개 념	225
2. 구체적인 형태	225
3. 사 례	226

III. 공급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26
1. 개념	226
2. 구체적인 형태	226
3. 사례	227
IV. 시장분할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228
1. 개념	228
2. 구체적 형태	228
3. 사례	228
V. 설비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5호)	229
1. 개념	229
2. 구체적 형태	230
VI.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230
1. 개념	230
2. 구체적 형태	230
3. 사례	231
VII. 영업수행·관리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7호)	231
1. 개념	231
2. 구체적 형태	232
3. 사례	233
VIII. 기타 사업활동방해·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33
1. 개념	233
2. 적용범위	234
제 4 절 공동행위 인가제도(법 제19조 제2항)	236
I. 인가의 요건	236
1. 산업합리화(제1호)	236
2. 연구·기술개발(제2호)	237
3. 불황 극복(제3호)	237
4. 산업구조 조정(제4호)	238
5. 거래조건 합리화(제5호)	238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제6호)	238
II.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239
III. 인가절차 등	239
제 5 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 제도	240
I.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240
II.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241
1. 개요	241
2. 감면제도의 내용	242
3. 정보누설 금지	248
제 6 절 담합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 거래관행들	248
I. 거래조건의 표준화	249

II. 최저가격보상제 249

제 7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 및 제재 250

I.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250

II.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50

- | | |
|-------------|--------------------|
| 1. 시정조치 250 |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50 |
| 3. 과징금 251 | 4. 벌칙 254 |

논점검토

- 논점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 및 관련쟁점 255
- 논점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272
- 논점 3. 카르텔의 악성(惡性)수준과 제재수준 282
- 논점 4.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의 성공조건과 한계 292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

제 1 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296

I. 입법연혁 296

II. 불공정거래행위 체계 298

III.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요소 299

1. '공정거래저해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300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부당하게'의 관계 302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303

제 2 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05

I. 거래거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305

- | | |
|-----------------|-----------------|
| 1. 공동의 거래거절 306 | 2. 기타의 거래거절 308 |
|-----------------|-----------------|

II. 차별적 취급(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309

- | | |
|--------------------|----------------|
| 1. 가격차별 309 | 2. 거래조건 차별 312 |
|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13 | 4. 집단적 차별 316 |

III.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23조 제1항 제2호) 316

- | | |
|-------------|---------------|
| 1. 부당염매 317 | 2. 부당고가매입 322 |
|-------------|---------------|

IV.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323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324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26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328		
V. 거래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329		
1. 끼워팔기	330	2. 사원판매	332
3. 기타의 거래강제	335		
VI. 거래상 지위남용(법 제23조 제1항 제4호)	337		
1. 구입강제	339	2. 이익제공강요	340
3. 판매목표강제	341	4. 불이익제공	342
5. 경영간섭	345		
VII. 구속조건부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346		
1. 배타조건부거래	348	2.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351
VIII. 사업활동방해(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354		
1. 기술의 부당이용	355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356
3. 거래처 이전방해	357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358
IX.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359		
1.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360	2.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362
3.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370		
제 3 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72		
I.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372		
1. 개 요	372	2. 경품류의 개념 및 유형	372
3. 금지행위	374		
II.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78		
1. 개 요	378	2. 개념(소매점고시 제2조)	379
3. 금지행위	379		
III.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83		
1. 개 요	383	2. 금지행위	384
IV.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87		
1. 개 요	387	2. 개념(신문고시 제2조)	387
3. 금지행위	388		
4.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392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92		

제 7 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 1 절	사업자단체의 개념 및 규제배경	395
I.	사업자단체의 개념	395
II.	규제배경	396
제 2 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397
I.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397
II.	사업자수 제한행위	402
III.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404
IV.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07
제 3 절	기타 관련사항	410
I.	사업자단체 준수지침 제정	410
II.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인정	410
III.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11

제 8 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 1 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412
I.	개 념	412
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	413
1.	무임승차의 방지	413
2.	제품의 이미지 훼손방지	413
3.	유통업체의 이익보장	413
4.	판매량 촉진	414
제 2 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414
I.	미국 판례법의 발전	414
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417
1.	원 칙	417
2.	예 외	418
제 3 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한 행위	420
I.	위탁매매계약	420
II.	일방적 거래거절	422

제 4 절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제재	422
-------	-------------------------	-----

제 9 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 1 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개념 및 규제취지	424
-------	---------------------------	-----

제 2 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	426
-------	--------------------	-----

I. 산업재산권도입계약·저작권도입계약·노우하우도입계약 427

II. 프랜차이즈도입계약 429

III. 공동연구개발협정 431

IV. 수입대리점계약 431

V. 합작투자계약 433

제 3 절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제도	433
-------	--------------------	-----

제 4 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제재	434
-------	----------------------------	-----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

제 1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436
-------	-------------------	-----

I. 독립규제위원회 436

II. 준사법기관 438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등	440
-------	--------------------------	-----

I. 설치·소관사무 440

II. 구 성 441

III. 회 의 443

IV. 사 무 처 446

논점검토

논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위원회 조직의 의의와 구성원리— 449

논점 2.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독립규제위원회의 조화 453

제11장 사건처리절차 등

제 1 절	사건의 인지	465
I.	신고의 법적 성격	465
II.	신고의 선별적 처리문제	467
제 2 절	사건의 조사	469
I.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470
II.	조사결과와 처리	473
제 3 절	사건의 심의	477
I.	개 관	477
II.	심의절차의 구체적 내용	478
1.	심사보고서 제출 및 송부	478
2.	주심위원지정 및 사전검토	479
3.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 신청	479
4.	심의준비절차	480
5.	심의부의 및 속개	481
6.	심의진행	482
제 4 절	의 결	485
I.	개 관	485
II.	의결된 위원회 시정명령의 효력	486
1.	행정처분으로서의 일반적 효력	486
2.	시간적 효력	487
제 5 절	불복제도	488
I.	이의신청	488
1.	이의신청제도의 성격	488
2.	이의신청의 대상	489
3.	이의신청 제기 및 재결	490
4.	집행정지	491
II.	행정소송	492
제 6 절	과 징 금	495
I.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격	495
II.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97
1.	일반적 사항	497
2.	회사분할 및 합병에 따른 특칙	499
3.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500
4.	가산금의 징수·채납처분 및 환급	501

제 7 절 손해배상 503

I. 개 설 503

II.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504

1. 당 사 자 504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 504

3.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506

4. 인과관계 507

5. 고의·과실 508

6.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의 관계 509

7. 소멸시효 509

8.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509

III. 기록의 송부 510

제 8 절 벌 칙 510

I. 형 벌 510

1.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 510 2. 양벌규정 512

3. 전속고발제도 514

II. 과 태 료 516

논점검토

논점 1.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제도 517

논점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 강화방안 528

논점 3. 공정거래위원회 증거조사 절차의 바람직한 골격 535

제12장 적용제외 등

제 1 절 적용제외 539

I. 개 설 539

II. 적용제외 대상행위 540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540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541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542

제 2 절 보 칙 543

- I. 비밀엄수의 의무 543
- II.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543
- III. 관계기관장 등의 협조 544
- IV. 권한의 위임·위탁 544

권말논문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545

판례색인 585

사항색인 589